

안산시의회 반월·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201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0. 09. 13.
발의자 : 김영철의원 외 14인

1. 주 문

- 안산시에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및 선도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,
- '반월·시화 국가산업단지' 내 기존 중소기업과의 구조적·기능적 연계 강화 등 상생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여 지역·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「안산시의회 반월·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
가. 구성목적

-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추진, 기존 기업의 이전 방지 추진 등으로 반월·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인프라를 개선하고, 시화 MTV 지역 등에 기업을 유치함으로서
- 중소기업과 대(선도)기업의 공존으로 주변지역의 연계개발과 파생 산업 발생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로 양질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활동기간 : 2010. 09. 27. ~ 2011. 03. 31.

다. 위원 수 : 7인

2. 제안이유

-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기반시설의 노후화, 생산기능 중심의 취약한 혁신환경으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.

- 또한, 산업용지의 부족, 높은 용지가격 등으로 기존 입주기업의 사업 확장도 어려워 일부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,
 - 그 동안 지나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선도기업의 신규 입주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 인력의 이탈 및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.
-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역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와 더불어 안산시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건임.
- 우리 시에 이미 잘 갖추어진 산·학·연 클러스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을 유치하여 기존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서 지역발전의 새 전기로 삼고,
 - 나아가 안산시가 21세기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제6대 안산시의회의 시대적 소명이라 판단되어 「안산시의회 반월·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 위원회」 구성을 제안함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56조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

- 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

- 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